

공개토론회 자료

본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 
2007. 3. 15(목) 朝刊부터 보도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## 2007~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---

### - 노동·육아 분야 -

- 2007년 3월 14일(수) 14:00 ~16:00
- 기획예산처 MPB Hall (청사 별관 2층)

###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노동·육아 분야 작업반

본 자료는 '07~'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·육아 분야 작업반에서  
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프 로 그 램

---

13:30 ~ 14:00

**등록 및 네트워킹**

14:00 ~ 16:00

**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, 대안은 없는가?**

사 회 : 이원영 (중앙대학교 교수)

발 제 : 김현숙 (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)

토 론 : 김재훈 (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)

남윤인순 (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)

이창미 (강동구청어린이회관 관장)

조윤영 (KDI 연구위원)

최창한 (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)

현진권 (아주대학교 교수)

# 목 차

## 토론주제 :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, 대안은 없는가?

I. 정부 육아지원의 필요성 및 현황 .....	1
1. 정부 육아비용지원의 필요성: 부모부담 경감 및 서비스 수준개선 .....	1
2. 정부의 육아지원계획 현황 .....	5
II.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 .....	11
1. 수요자 보조: 차등보육료 확대 및 재조정 .....	11
2. 수요자 보조: 기본보조금 부분 유지 및 차등보육료 확충 .....	15
3.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 .....	19
III. 요약 및 결론 .....	21
참고문헌 .....	23
노동·육아 분야 작업반 .....	24

# 토론주제

**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,  
대안은 없는가?**



## I. 정부 육아지원의 필요성 및 현황

### 1. 정부 육아비용지원의 필요성 : 부모부담 경감 및 서비스 수준개선

#### □ 육아비용지원의 효과

- 보육산업의 외부성을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자 혹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
- 양(+)의 외부성을 가진 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
-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며,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과

#### □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

-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보육서비스 수요 확대
-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

#### □ 우리나라 정부의 육아비용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

-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육아지원은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

〈표 1〉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정부부담 현황

구 분	스웨덴	프랑스	호주	핀란드	독일	헝가리	네덜란드	영국	한국
보육교육비/ GDP(%)	1.67	0.80	0.30	0.39	0.55	0.55	0.31	0.35	0.35
정부부담률(%)	88	73	66	97	91	78	78	70	52

자료: OECD country notes, 기준년도 2003~2005.

한국 기준년도는 2006; 서문희 외 (2006); 여성가족부 내부자료

-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미국보다도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이 낮고,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부 재정지원 수준은 국제비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확대 필요

□ 질 낮은 육아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선 필요

- 현재 민간 공급업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비해 낮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상향조정이 큰 과제
-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규제는 공급자로 하여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
-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전체 투입비용을 표준보육비용<sup>1)</sup> 수준까지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 “기본보조금” 도입 추진

1) 표준보육비용은 조세연구원(2005)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비용수준을 산출한 것으로 '표준'이라 함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을 감안하고 제 법령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수준을 의미함.

□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보조금의 관계

- 보육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데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 효율적인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수요공급 조건과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밀접히 연계
  -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, 공급자 보조금을 통해 시설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
  - 이미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공급자가 선별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
-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소비자선택권 강화, 공급자간의 경쟁 활성화, 정부의 서비스 개선관련 항목에 대한 지속적 투자,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,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달성
  - 위의 항목 중 소비자 선택권이나 공급자간의 경쟁 활성화,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는 수요자 보조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가능
  - 공급자 보조금은 시설의 서비스 개선항목에 대한 안정적 투자에 도움.
  -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나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공급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면서 수요자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
  - 수요자 보조금을 이용하면서 정부가 공급업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(예: 인증제도)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느 정도 해소 가능

<표 2>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요소 및 보조금의 특징

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요소	수요자 보조금	공급자 보조금	기본보조금
소비자 선택권 강화	○	×	×
공급자간 경쟁 활성화	○	×	△
서비스 개선항목과의 직접적 연계	×	○	△
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	○	×	△
정보의 비대칭성 해소	△*	○*	△*

주: 1) ○는 큰 효과, △는 중간정도 효과, ×는 효과 없음을 의미

2) △\*는 표준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자가 출현하거나 공급업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의미

3) ○\*는 직접적으로 국공립을 운영하는 경우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의미

○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보조금을 주로 이용하고 국공립 시설을 일부 운영하는 등 공급자 보조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

□ 육아지원 보조금이 충족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소득계층별 구매력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

○ 영유아 육아비용지출은 가구의 지출 중 필수재(necessities)에 대한 지출이므로 가구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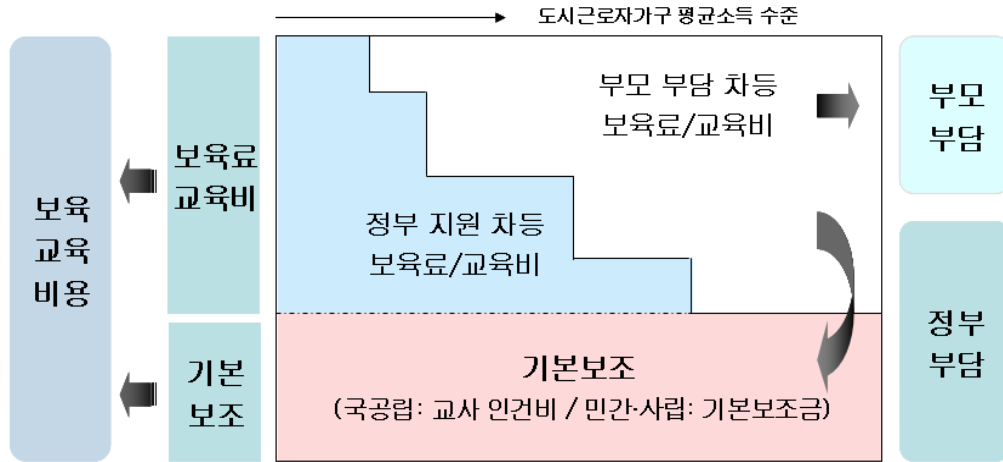
## 2. 정부의 육아지원계획 현황

### 가. 기본보조금 도입의 취지와 문제점

#### □ 기본보조금 도입의 전제 및 원칙

- 기본보조금은 적정 수준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조세연구원(2005)이 산출한 표준보육비용으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도출
-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국공립과 민간보육 시설의 아동 1인당 투입비용을 동일화한다는 전제 하에 도출
- 따라서 현재의 표준보육비용과 차등보육료 단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통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수에 따라 시설에 제공
- 기본보조금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연계하기 위해 최저 교사인건비 준수, 아동 대 교사비율 준수, 4대 보험 가입, 평가인증 신청 등을 기본보조금 수혜조건으로 연계
  - 아동별 지원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자 보조금처럼 서비스 개선항목과 연계를 시도
  -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원칙을 유지

[그림 1] 육아지원시설 비용부담구성 (2008)



-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2008년 도입될 예정인 기본보조금(이미 영아에 대해서는 도입, 유아에 대해 도입예정)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요소 중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나 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
  - 기본보조금은 보육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는 비효율적
  - 기본보조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수요자 보조금의 장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며, 공급자 보조금처럼 서비스 개선 항목과의 직접적 연계도 다소 어려움이 존재함.
- 육아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
  - 소득층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기본보조금 지원은 시설이용에 대한 보조금의 탄력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이용 아동 수의 증가에 있어서도 열위
  - 월별로 시설이용 아동수가 변화하는 가운데 연간단위로 일정액

의 정액이나 정률의 교사급여 증가액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워 기본보조금을 교사인건비와 연계하는 등 서비스 개선항목에 직접적으로 매칭하기 어려움.

-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개선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한 교사인건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

## 나. 기존보조금 제도와 형평성<sup>2)</sup>

### □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부모부담수준

-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은 만0세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6년의 보육료 상한선(=차등보육료 단가)인 350,000원을 연 3%의 물가상승률만 연동한 수준에서 고정시키고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상한선의 차액은 모두 기본보조금으로 제공

〈표 3〉 기본보조금 예시 (2008)

정부지원시설	민간 보육시설
만0세 표준보육비용 :월 791,000원 (A)	만0세 표준보육비용 : 월 712,000원 (A)
만0세 부모부담액 :월 372,000원 (B)	만0세 부모부담액 : 월 372,000원 (B)
만0세 정부지원 :월 419,000원 (A-B)	만0세 기본보조금 : 월 340,000원 (A-B)

주: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는 기본보조금 대신 교사인건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

- 기본보조금 외의 소득층에 따른 차등보육료 수혜율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균소득 130% 계층까지 확대

2) 기존보조금은 현재 계획된 차등보육료 방안에 기본보조금이 도입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안을 의미함.

〈표 4〉 소득계층별 보육료 확대계획

소득계층	지원비율(0~4세)			
	2007	2008	2009	2010
▪ 법정저소득층	100	100	100	100
▪ 차상위계층	100	100	100	100
▪ 평균소득의 50%	50	80	80	80
▪ 평균소득의 60%		60	60	60
▪ 평균소득의 70%				
▪ 평균소득의 100%	20	30	30	30
▪ 평균소득의 130%	-	-		

□ 기본보조금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

-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형평성 위배
  - 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지출 비율은 역진적이어서 『2004 보육·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』에 따르면 소득1분위(소득 약 88만원)의 경우에는 보육비용이 전체 소득의 14.7%를 차지하고 소득10분위(소득 약 497만원)의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비중이 7.2%임.
  - 기본보조금은 가구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보육비 지출의 역진성을 개선하지 못함
- 보육시설이용 가구의 아동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반면, 시설 미이용 가구의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전혀 혜택이 없어 차등보육료와는 달리 시설 미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

□ 기존 보조금 제도 하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

-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도입을 전제로(<표 4> 참조)하여 2008년 기준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은 <표 5>와 같음

〈표 5〉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중  
(만0세 기준)

소득계층	소득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중(%)			
	2007	2008	2009	2010
▪ 법정저소득층	0%	0%	0%	0%
▪ 차상위계층(144만원)	0%	0%	0%	0%
▪ 평균소득의 50% (144만~184만원)	4.4%	4.4%	4.4%	4.4%
▪ 평균소득의 60~70% (184만~258만원)	8.2%	6.5%	6.5%	6.5%
▪ 평균소득의 100% (258만~369만원)	9.2%	8.1%	7.3%	7.3%
▪ 평균소득의 130% (369만~480만원)	8.5%	8.5%		
▪ 상위소득 20% (574만원)	6.9%	6.9%	6.9%	6.9%
▪ 상위소득 10% (742만원)	5.3%	5.3%	5.3%	5.3%

주: 4인 가구 기준, 상위소득 20%와 10%의 가구평균소득은 건강보험 만5세 이하 자녀가구의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였으며 두 소득계층은 현재 차등보육료 미지원 계층임.

- <표 5>는 만0세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다른 연령군(만0~4세)에서도 계층별 부담비중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.
-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차등보육료의 계층별 수혜수준은 평균소득 60~130%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음.
  - 2007년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100% 수준인 가구의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이 평균소득 130%인 가구보다 높아 정부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

- 2010년까지의 전체 계획을 살펴볼 때 상위소득 20% 이상의 고소득층보다도 보육료 부담비중이 높은 평균소득 60~130% 계층의 부담을 완화해가는 새로운 디자인 필요
- 기본보조금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차등보육료의 수혜계층에 따른 부모부담액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소득대비 부모부담 비중도 변화하지 않아 소득층간의 부모부담 수준의 격차를 개선할 수 없음.
- 평균소득 60~70%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 역시 낮은 수준이므로 소득 50%계층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두 구간을 통합하여 차등보육료 부분수혜 폭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

## Ⅱ.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방안

### 1. 수요자 보조: 차등보육료 확대 및 재조정

- 보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보조금을 새롭게 고안하는 작업이 필요
  - 2010년까지 확정되어 있는 보조금 예산(차등보육료+기본보조금)을 활용하여 소득층에 따른 부모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새로운 보조금을 디자인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
  - 현재 계획된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중은 <표 5>와 같아 평균소득 100~130% 계층의 소득대비 부담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 형평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움.
  - 확보된 예산을 차등보육료로 재조정하면 형평성 개선 가능
- 전체 예산을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수준이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지도록 재조정
  - 상위 10%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나 편부모 가구의 경우 보육료 15% 지원
    - 가계조사자료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, 상위소득 10%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약 35.5%
    - 상위소득 10%에 해당하는 가구의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소득원을 증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.

- 소득층의 구매력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층이 높을수록 보육료 부담 비중이 높도록 설계
  - 상위소득 20%와 상위소득 10% 계층의 보육비 부담비중은 일부 증가

〈표 6〉 전액 차등보육료로 활용할 경우 만0세아의 계층별 보육료 부담 (2008년 기준)

소득계층	차등보육료 수혜율(%)	부모소득대비 보육료 비중(%)	예산소요액(원)
▪ 법정저소득층	100	0	10,676,582,400
▪ 차상위계층 (144만원)			30,605,462,400
▪ 평균소득의 50% (144만~184만원)	85	5.2	12,098,432,160
▪ 평균소득의 60~70% (184만~258만원)			11,251,636,320
▪ 평균소득의 100% (258만~369만원)	55	8.5	18,554,791,200
▪ 평균소득의 130% (369만~480만원)			4,135,296,000
▪ 상위소득 20% (574만원)	30	8.7	2,255,616,000
▪ 상위소득 10% (742만원)	맞벌이	9.1	400,371,840
	홀벌이		-

주: 표준보육비용(=차등보육료)은 2008년 기준으로 712,000원임.

-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만0세아 지원에 필요한 총보육예산은 2008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로 확보된 예산에 비해 크지 않음.
  - 총예산은 국고기준 900억 원으로 2008년 기준으로 차등보육료로 확보된 예산 370억과 기본보조금 예산 464억원에 국공립

보육시설에 대한 지원(민간시설에 대한 1인당 기본보조금보다 큼)을 합한 금액보다 크지 않음.

- 유아의 경우에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예산을 차등보육료 예산으로 모두 활용할 경우 유사한 결과 도출

<표 7> 전액 차등보육료로 활용할 경우 만3세아의 계층별 보육료부담 (2008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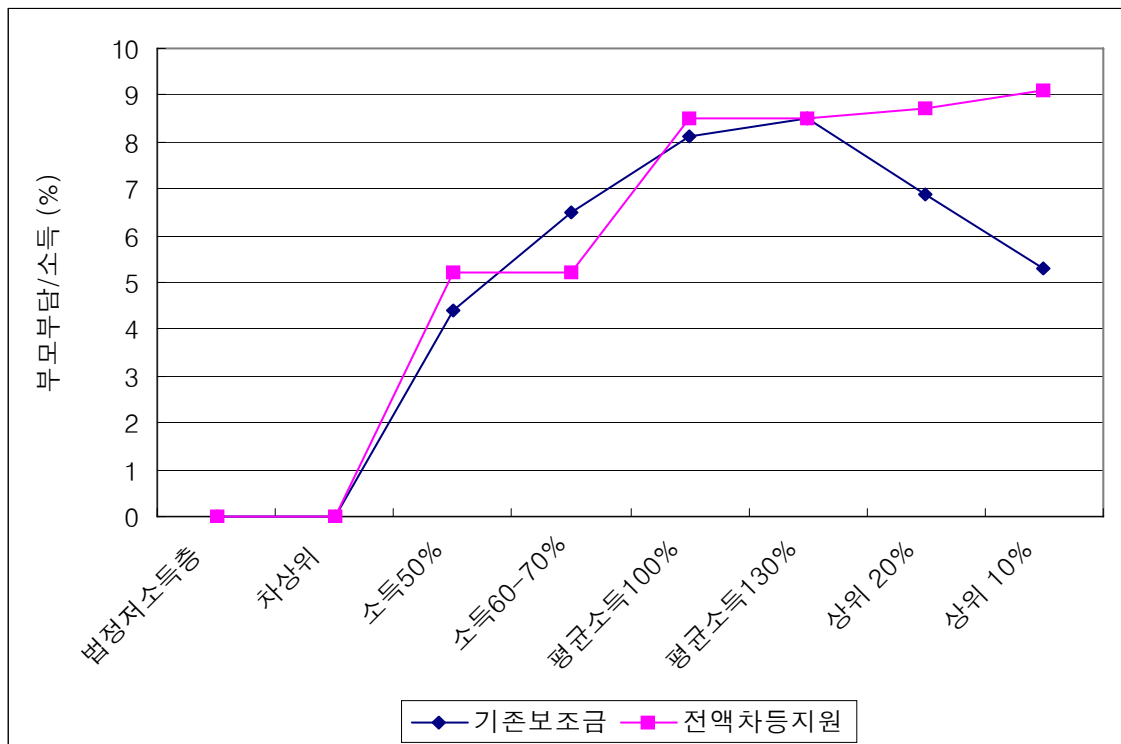
소득계층	차등보육료 수혜율 (%)	기존 보조금 제도 하의 부모소득대비 보육료 비중 (%)	새로운 보조금 하의 부모소득 대비 보육료 비중(%)	예산소요액 (원)
▪ 법정저소득층	100	0	0	22,392,902,400
▪ 차상위계층 (144만원)				64,194,928,800
▪ 평균소득의 50% (144만~184만원)	85	2.0	1.6	25,379,167,740
▪ 평균소득의 60~70% (184만~258만원)		2.8		23,602,324,680
▪ 평균소득의 100% (258만~369만원)	55	3.4	2.5	38,919,305,700
▪ 평균소득의 130% (369만~480만원)		3.8		11,305,272,000
▪ 상위소득 20% (574만원)	30	3.1	2.7	6,166,512,000
▪ 상위소득 10% (742만원)	맞벌이	2.4	2.8	1,094,555,880
	홀벌이			0

주: 표준보육비용(=차등보육료)은 2008년 기준으로 242,000원임.

-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만3세아의 총보육예산은 2008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로 확보된 예산보다 다소 크나 조정가능
  - 새로운 시나리오 하의 국고기준 총 보육예산은 1,931억원으로 2008년 차등보육료 예산 1,199억원과 기본보조금예산 622억원의 합인 1,821억원보다 약 100억 많으나 국공립 시설의 아동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하면 총 예산은 비슷한 수준
  - 평균소득 100~130% 계층의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관적으로 증가

□ 현 계획대로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수준별 형평성이 크게 개선

[그림 2] 만 0세아의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수준 비교



## 2. 수요자 보조: 기본보조금 부분 유지 및 차등보육료 확충

□ 기본보조금을 현재 계획안 대비 50%로 삭감하고 나머지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활용하는 방안

- 상위소득 10% 계층에게도 현 기본보조금의 50%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추가지원은 고려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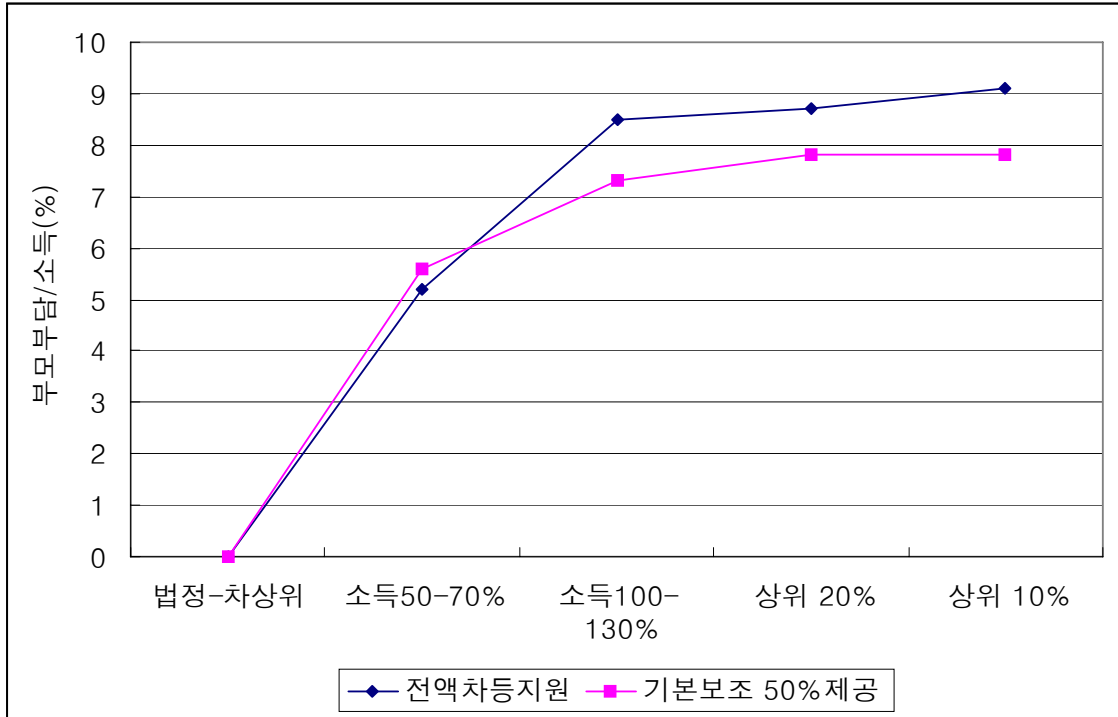
〈표 8〉 기본보조금 50%를 차등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만0세아의 계층별 보육료 (2008년 기준)

소득계층	차등보육료 수혜율(%)	부모소득대비 보육료 비중(%)	예산소요액(원)
▪ 법정저소득층	100	0	10,676,582,400
▪ 차상위계층 (144만원)			30,605,462,400
▪ 평균소득의 50% (144만~184만원)	80	5.6	12,066,446,880
▪ 평균소득의 60~70% (184만~258만원)			11,221,889,760
▪ 평균소득의 100% (258만~369만원)	50	7.3	20,895,462,000
▪ 평균소득의 130% (369만~480만원)			4,656,960,000
▪ 상위소득 20% (574만원)	22	7.8	3,054,374,400
▪ 상위소득 10% (742만원)	0	7.8	1,645,600,000

주: 2008년 기준으로 전소득층에게 기본보조금을 현 계획안 340,000원의 절반인 170,000원 제공

- 총 보육료 예산은 국고기준으로 948억 원으로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으로 확보된 833억 원에 비해 약 100억원 많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그 차액은 크지 않음.
  - 평균소득 130% 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체 예산은 증가
  - 전체 보육료 예산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지만 예산은 다소 증가
- 전 소득층에게 정액의 지원을 제공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부담비중이 낮도록 설계
  - 기본보조금의 액수를 감소시켰으나 전 소득층에게 일정한 지원은 제공
  - 이 경우 재원이 일부 증가하지만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고
- 전체 보육료 예산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비중은 낮아지고 중간소득층 부담은 약간 증가

[그림 3] 시나리오에 따른 만0세아의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수준 비교



- 전액을 차등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정액의 기본보조금을 50%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부모 부담비중은 완만하게 증가
- 유아의 경우에도 기본보조금의 50%를 차등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만0세아와 유사한 결과 도출
  - 고소득층의 보육료 부담비중은 감소하고 중간소득층의 부담은 약간 증가

〈표 9〉 기본보조금 50%를 차등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만3세아의 계층별 보육료  
(2008년 기준)

소득계층	차등보육료 수혜율 (%)	기존 보조금 하의 부모소득대비 보육료 비중 (%)	새로운 보조금 하의 부모소득대비 보육료 비중 (%)	예산소요액 (원)
▪ 법정저소득층	100	0	0	22,392,902,400
▪ 차상위계층 (144만원)				64,194,928,800
▪ 평균소득의 50% (144만~184만원)	80	2.0	1.9	24,473,001,720
▪ 평균소득의 60~70% (184만~258만원)		2.8		22,759,601,040
▪ 평균소득의 100% (258만~369만원)	50	3.4	2.5	38,857,504,500
▪ 평균소득의 130% (369만~480만원)		3.8		11,287,320,000
▪ 상위소득 20% (574만원)	22	3.1	2.7	6,097,396,800
▪ 상위소득 10% (742만원)	0	2.4	2.7	2,019,60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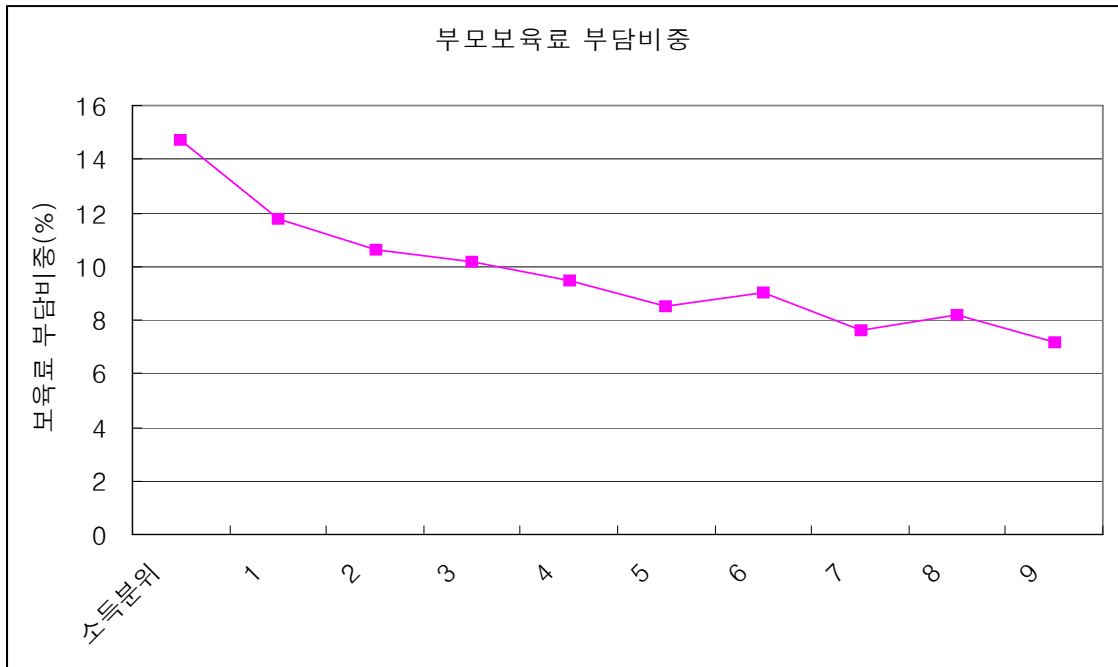
주: 기본보조금으로 전 소득계층에 22,500원 제공

- 총 보육료 예산은 1,921억원으로 차등보육료와 만3세 기본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인 1,821억원보다 크나 국공립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님.
- 최고소득층에게도 기본보조금의 형태로 정액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고소득층의 보육료 부담비중을 하향 조정하였으나, 현재 계획안보다는 소득층별 형평성이 제고됨.

### 3.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

- 2004년 실태조사 결과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 디자인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
  - 『2004 보육·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』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의 소득계층별 지불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9.6%이며 1분위는 14.7%, 10분위는 7.4%임.
  - <표 4>의 차등보육료 지급에 따른 보육료 부담비중과 차이가 있는 것은 실태조사의 서비스 이용가구는 다양한 육아서비스 비용에 따른 총 지출규모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며 소득계층 부담비중도 <표 5>와 차이가 있음.

[그림 4] 소득분위별 부모보육료 부담비중(2004 보육실태조사)



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

-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출부담은 매우 큰 편
-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역진적임.
- 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보조금 예산을 모두 차등보육료로 전환하는 대안이 바람직
- 상위소득 20% 이상 가구의 보육료 부담도 과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보조금 예산의 절반을 차등보육료로 전환하는 대안을 고려

### Ⅲ. 요약 및 결론

-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
  - 기본보조금은 모든 소득계층의 명목적인 보육비 부담을 동결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가구의 소득에 따른 구매력의 형평성은 충족시키지 못하며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층의 보육비 부담비중을 가중
  - 기본보조금의 일부를 소득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전액을 차등지원 형태로 전환할 경우 형평성은 크게 개선
- 육아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제도 개선이 필요
  - 인증평가제도 등과의 연계는 차등보육료의 수혜여부와 인증통과 여부를 연계하여 수행해도 가능
    - 예: 호주의 자녀보육수당(Child Care Benefit)과 인증제도의 통과 연계
    -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재원을 모두 차등보육료로 활용하는 경우 보육 시설별로 제공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아동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전체 총액으로는 거의 동일하므로 정부 보조금 지원크기는 유사
  - 교사의 인건비 수준과의 연계 등은 전형적인 공급자 보조금이 아니면 다소 한계
  - <표 2>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보조금 형식보다는 차등

보육료 형태의 수요자 보조금과 일부 공급자 보조금의 운용이 바람직

-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
  - 기본보조금은 아동별 지원이기는 하나 시설에게 정액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므로 부모가 받는 보조금으로 인식되기 어려움.
  - 기본보조금의 일부는 소득층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차등 지원하더라도, 하나의 보육료 체계로 구성하여 정부가 수요자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
  - 수요자 보조금인 차등보육료를 “정액지원+소득별 차등지원”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

## 참고문헌

- 김현숙, 『영유아 보육·교육과 정부의 역할』, 정책토론회 자료집, 한국조세연구원, 2005.11.
- 김현숙, 『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: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』, 재정포럼 2006년 5월호, 한국조세연구원, 2006.
- 김현숙, 『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』,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용역보고서, 한국조세연구원, 2006.12.
- 보건사회연구원, 『2004 보육·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』, 보육실태조사 제 I 과제,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, 2005.
- 서문희 외, 『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방안 연구』, 육아정책개발센터, 2006
- 한국조세연구원, 『표준보육·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』, 보육실태조사 제IV과제,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, 한국조세연구원, 2005.
- OECD, Country Note,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, 여러 해.

## 노동·육아 분야 작업반

한국개발연구원	: 김용성 연구위원
	: 조윤영 연구위원
숭실대학교	: 정무성 사회복지대학원장
한국노동연구원	: 김혜원 연구위원
	: 황수경 연구위원
서울복지재단	: 이성규 이사장
한국조세연구원	: 김현숙 연구위원
육아정책개발센터	: 서문희 연구위원
교육인적자원부	: 유아교육지원과장
노동부	: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
	: 장애인고용팀장
보건복지부	: 사회서비스기획팀장
여성가족부	: 보육재정팀장
재정경제부	: 인력양성과장
	: 복지경제과장
기획예산처	: 사회재정기획단장
	: 노동여성재정과장
	: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
	: 기획총괄팀장